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 1092호
- 다. 제출일자 : 2016. 4. 7
- 라. 회부일자 : 2016. 4. 12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상위법과의 일관성 유지 및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의용소방대 설치, 전문의용소방대 자격조건 구체화(안 제1장)

(설치)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의용소방대를 추가 설치함.

(전문의용소방대 자격) 새로 설치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조직, 정원 등을 명확히 함(안 제2장)

(임명)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며, 모집인원에 부족할 때 추천에 의하여 임명 가능함.

(해임) 대원 해임 시 해임통지서 통보, 사직 시 사직서 제출 의무

(조직) 조직과 직위 내용과 고문 위촉 가능성 정함

(임기) 지역대장·전문대장 ⇨ 3년 임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

(정원)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 각 40명,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 - 각 20명

(신분증명서 발급) 대장·부대장 ⇨ 시장이 발급,

지역대장 이하 : 소방서장 발급 ※재발급 시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받음

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심의안건·심의절차 등을 규정(안 제3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5~9명의 인원으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경험자로 구성하며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

(심의대상) 성과중심 보상 심의, 고문위촉, 지역대장·전문대장 추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 등) 심의대상 의용소방대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 마. 의용소방대원 복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안 제4장)
 - (복무지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연2회 복무지도
 - (교육 및 훈련) 법과 규칙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훈련 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예산범위 내 여비 지급
- 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재해보상, 장학금의 지원 등을 정함(안 제5장)
 - (소집수당) 임무 수행 시 지급, 월간단위 계산 분단위 이하 제외
 - (성과중심의 보상) 활동실적 반영한 성과중심 보상, 공적에 의한 포상, 대원의 사기진작 등
 -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종류, 청구 및 지급절차, 지급방법, 지급순위
 -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지급의 자격, 인원, 금액 기준 및 지급정지 사유
 - (경비부담) 소방활동 지원, 장비와 물품 구입,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홍보, 교육·훈련, 장학금, 재해보상금
- 사.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임무, 경비지원 등(안 제6장)
 - (구성·임무) 의용소방대 정보교환과 지역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하며, 협력과 소방업무 지원의 임무 부여
 - (경비지원) 시장은 연합회 활동경비 지원 할 수 있음
- 아. 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및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7장)
 - (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요청 시 소방서장은 적극 참여 및 지원
 - (권한위임) 시장은 권한의 일부를 의용소방대 운영상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합 의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협의완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의견반영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①항, 16조 ③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 반영 • 16조 ③항에 의한 직무교육 규정 삭제로 미반영 • 체력검진과 체력향상 지원은 별도의 예산조치 문제와 민간인 규제사항으로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담당관 의견 일부 반영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6. 2. 11. ~ 3. 2.) 결과: 별첨

(2) 비용추계 등 자료: 미첨부사유서 별첨

5. 검토의견

■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분리제정(2014.1.28)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정안
1. 총칙	설치의 범위와 주체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u>혼성의용소방대</u> , 지역의용소방대, <u>전문의용소방대</u>
		소방서장	시장 또는 소방서장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기준 정함
2. 의용소방대의 임명, 정원, 정년, 해임 등	임명	- 공개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임용	-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
		- 대 장 : 임기 3년, 시장임명, 1회연임 - 부대장 : 임기 3년, 서장임명, 2회연임	- 대장, 부대장 : 임기 3년, 시장임명, 운영위원회 심의, 1회 연임(법시행규칙)
	임명 주체	- 대장 : 시장 - 부대장 이하 : 소방서장	- 대장, 부대장 : 시장 - 지역대장 이하 : 소방서장
	정원	- 의소대(50명내외), 여성대(20명내외), 지역대(26명내외)	- 남성대 또는 혼성대(40명이내), 여성대(40명이내), 지역대전문대(20명이내)
	정년	- 일반대원 : 60세, 간부대원 : 63세	- 전 대원 : 65세 (법률)
	해임	- 소재의 불분명, 금지행위 활동 등 8개 항목의 해임사유 규정(조례11조)	-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사실을 통지하고 - 출석·진술하거나 의견 제출 가능 -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서 제출 규정(안 제5조)
3. 운영위원회 심의	구성	(신설)	-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		- 의용소방대 주무부서의 장
	위원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 사항		- 성과중심의 보상심의,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복무/교육·훈련		복무감독 : 소방서장이 연 2회 이상 교육·훈련 : 의용소방대장이 월1회 4시간 이상	복무감독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연2회이상 교육·훈련 : 교육사항을 개인별 관리 - 교육훈련 시 여비 지급
5. 경비 및 재해보상	경비부담 (활동비등)	- 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의 실비 지급 - 시장은 대규모 공익행사, 자연재해 동원 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 ※ 재해보상금 지급 등 7개 항목 규정
	출동 수당	- 소방 및 재난업무 관련 출동 또는 동원된 대 원에게 1일1회에 한하여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47,600원)	- 소집수당 신청 시 소방활동 증빙자료 제출 - 소집수당은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지급 -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지급(시간당 10,506원)
	성과중심 보상	(신설)	-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활동실적 반영하여 보상 또는 포상표창수여, 국내외 견학,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재해 보상	-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청구 - 시장은 지급결정 및 즉시지급	-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결정 즉시지급

■ 의용소방대 연혁 및 운영현황

- 의용소방대¹⁾는 1954년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다가 1958년 「소방법」 제정에 따라 그 설치 근거가 마련됨.
 - 서울시는 1972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한편, 2015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으며 현재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75대 4,531명에 해당함.

1) 의용소방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되는 비상근 소방대로서 주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2] 2015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구 분	내 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 ○ 1958. 3월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명시 ○ 1972. 12. 20.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정 ○ 2008.1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근거 신설 ○ 2014. 1. 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정 공포(7월29일 시행)
조직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총 3,447대, 총 94,117명으로 구성 활동 중 - 서울시 총 175대 4531명으로 구성 활동 ○ 출동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총 7,625회, 연인원 118,368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 봉사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총 15,669회, 연인원 74,067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
예산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구분 : 시·도 예산을 각 소방서별로 편성 ○ 예산현황 : 총 27억 35백만원(‘15년)

■ 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한 검토

가. 의용소방대 구성 세분화(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현행 의용소방대 구성(의용소방대(남성),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을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와 그 하부조직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 이는 법률 제2조2)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총리령’) 제2조3)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에 따른 것으로 설치권자 역시 현행 ‘소방서장’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하고 있음([표 3] 참조).

[표 3] 의용소방대 조직 설치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안
설치권자	소방서장	시장 또는 소방서장
설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소방대(정원 50명 내외), 여성의용소방대(20명 내외), 지역의용소방대(26명 내외) ※ 상기 정원은 조례규칙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각40명 이내) -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각 20명 이내) 설치 가능

- 이처럼 현행 의용소방대를 보다 세분화하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임무와 활동의 특성에 맞게 보다 전문화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 이 중 전문의용소방대는, 화재중심의 소방업무가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분야로 크게 확대되는 현 추세를 고려하여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즉,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전문교육 이수자, 소방활동에 활용가능한 장비보유자, 변호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자 등 일정자격 이상을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갖춘 사람을 적극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나.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안 제4조~제5조)

- 안 제4조와 제5조는, 현행 의용소방대원의 임명과 해임 방법과 관련하여 법률 및 총리령에 따라 [표 4]와 같이 일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의용소방대원 임명 및 해임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안
임 명	- 부대장 이하의 대원은 공개절차를 통하여 소방서장이 임용	-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 - 제출된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
	※ 임명의 주체 - 대장 : 시장 - 부대장 이하 : 소방서장	※ 임명의 주체 - 대장, 부대장 : 시장 - 지역대장 이하 : 소방서장
해 임	- 소재불명,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 해임사유 만을 명시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용소방대원 해임의 경우는 해임사실을 통지 -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
	※ 해임사유 등은 법률과 총리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해임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의 경우, 부대장 이하 대원은 소방서장이 공개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소방서장이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분기별로 자체 심사하여 임용여부를 결

정하고 있음⁴⁾.

- 이는 그동안 절차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었으나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만큼 금회 개정안이 ‘공개절차’가 아닌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경쟁선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여겨짐.
- 또한, 해임의 경우, 현행은 소재불명, 심신장애, 직무태만 등의 해임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어 전적 임용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해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한편,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추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음.

다. 운영위원회 신설(안 제11조~제13조)

- 안 제11조~제13조는, 현행에 없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를 총리령 제12조⁵⁾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세부적인 구성·심의대상·

4)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원의 임용절차)
③ 소방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일반대원의 임용여부와 임용순위를 결정한다.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표 5] 참조).

[표 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제13조)

구 분		현 행	개정안
운 영 위 원 회	구성	(신설)	-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장		- 의용소방대 주무부서의 장
	위원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 사항		- 성과중심의 보상심의, 의용소방대의 고문 위촉,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추천,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이처럼 운영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은 의용소방대의 합리적 운영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로 이해되어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라. 수당 및 보상 (안 제16조~제18조)

(1) 소집수당 (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해 소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규정인데,
 - 현행 ‘출동수당’이 ‘소집수당’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고, 현행의 경우, 대원별 1일 1회에 한해 소방사 3호봉 월액⁶⁾을 30으로 나눈 47,6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6)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0) , 2014년도 소방사 3호봉 월봉금액 1,428,500원

- 개정안은 총리령 제19조7)에 따라 4시간 이내에서 지방소방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인 시간당 10,506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있어 최대 4시간 근무시 42,024원을 지급하여 현행보다 소폭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남.
- 이 때, 임무를 수행한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는 ‘소방출동(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소집에 따른 활동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활동시간이 다르더라도 지급액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2) 성과중심 보상 (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총리령 제20조8)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성과중심의 보상제도’를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의용소방대원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나은 성

-
-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과를 유도하는 한편, 활동에 대한 보다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어 발전적인 대안이라 사료되며,

- 다만, 성과평가지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3) 재해보상 (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 제17조9) 및 총리령 제21조10)에 준하되, 보상청구일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보상청구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토록 하고 있음.
- 이는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이나 부상, 사망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칫 보상청구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상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마. 경비부담(안 제21조) 및 기타사항

- 경비부담의 경우 현행과 달리 법 제14조¹¹⁾ 및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¹²⁾’에 근거하여 재해보상금 지급, 소방기술경연 및 소방홍보, 장학금 등에 필요한 경비 7개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표 6] 참조).

[표 6] 기본경비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안
기본경비 (안 제21조)	대원에 대한 수당, 부상 및 사망보조금, 의소대 및 지역대의 장비관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조례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조례 제21조) 1.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3. 소방홍보 4.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 5.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6. 재해보상금 7. 그 밖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이는 경비지원 대상 및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 기타 나머지 조문들은 현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붙임] 1. 현행조례 개정사항

- 1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2)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6593호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전면개정 알림」, 2014.11.11

[붙임] 1.

현행조례 개정사항

현행조례	법·시행규칙에 포함	개정여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명칭) 제4조(의소대의 표지)	법 제2조, 규칙 제2조 규칙 제3조 규칙 제4조	개정 개정 삭제 개정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 등) 제6조(조직) 제7조(대장 등의 임무) 제8조(대원의 임용) 제9조(대장 등의 임기) 제10조(고문의 위촉) 제11조(해임사유) 제12조(대원의 신분증명)	법 제3조, 제5조, 규칙 제7조 법 제6조, 규칙 제8조, 제11조 법 제7조, 규칙 제9조, 제13조 법 제6조, 규칙 제5조 규칙 제10조 법 제4조, 규칙 제6조 법 제8조, 규칙 제15조	개정 개정 삭제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3조(복무의무) 제14조(금지행위) 제15조(복제) 제16조(복무감독) 제17조(검열) 제18조(교육 및 훈련)	법 제9조, 제10조 법 제11조 규칙 제14조 법 제12조 법 제12조 법 제13조	삭제 삭제 삭제 개정 삭제 개정
제4장 의소대의 경비, 수당 및 보상금 제19조(기본경비) 제20조(출동수당) 제21조(활동비 보조 등) 제22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제23조(요양보상) 제24조(장애보상) 제25조(장제보상) 제26조(유족보상) 제27조(재해보상 청구) 제28조(장학금 지원) 제29조(장학금 지급정지)	법 제14조 법 제15조, 규칙 제19조 법 제16조 법 제17조, 규칙 제21조 법 제21조 법 제21조 법 제21조 법 제21조 법 제21조 법 제21조	삭제 개정 삭제 개정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개정 - -
제5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30조(의용소방대연합회) 제31조(연합회의 임무) 제32조(연합회의 경비지원) 제33조(관할구역 내의 업무지원 등) 제34조(권한위임)	규칙 제22조	개정 - - - -